

아시아·太平洋地域內 經濟統合 — 國際經濟政策的 接近 —

金世源*

<目次>

- I. 머리말
- II. 工業化와 對外經濟政策
- III. 經濟統合의 政治經濟的 側面
- IV. 國際主義의 限界
- V. 東南亞國家聯合을 通한 經濟統合
- VI. 新로운 國際經濟秩序의 摸索
- VII. 맺음말

I. 머리말

다른 地域들의 경우와는 달리 아시아·太平洋地域은 거의 唯一하게 經濟統合의 歷史를 경험하지 않았거나, 나아가 同地域內 어떤 國家도 이와 關聯하여 아직 公式的으로 立場을 分明히 하지도 않고 있다.⁽¹⁾ 經濟統合이 會員 國家間一定한 經濟的 條件의 充足을 前提로 할 뿐만 아니라 다른 部門, 特히 政治, 外交 分野에서의 긴밀한 協力を 要求한다는點이 그 重要한 要因으로 指摘될 수 있다.

經濟統合의 前段階로서 아시아 支拂同盟案이 이미 1948年 당시 아시아 極東經濟委員會(ECAFE)總會에서 提起되었다. 25년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同案이 1973년 아시아 清算同盟(ACU)이라는 名稱으로 實현되기는 하였으나 극히 制限된 會員國만을 포함하고 있다.⁽²⁾

한편 60年代 중반에 들어서면서 西 유럽經濟統合을 모델로 한 太平洋自由貿易地域(PAFTA)案이 登場하였고⁽³⁾ 肯定的인 反應을 얻지 못하자 中間段階의 한 形態로서 同地域內 經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貿易學科 教授. 本論文은 現代基金의 財政的 支援을 받아 作成된 것임.

(1) 本稿에서 經濟統合이라 함은 自由貿易地域 以上的 形態, 即 一定 會員國間 최소한 完全特惠의 提供을 基지로 하는 經濟關係를 의미한다. 따라서 協力과는 根本的으로 區別되는 개념으로 使用되었다.

(2) 初期 會員國은 뱅글라데슈,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및 네팔이며 그 후 1975年 이란이 加入하였다.

(3) K. Kojima, *Japan and a Pacific Free Trade Area*, McMillan, 1971.

濟的 特殊한 與件을 감안한 太平洋貿易開發機構(OPTAD)의 設立이 1979年 提議되었다.⁽⁴⁾

이 두 案이 모두 學界의 見解인 데 反하여 環太平洋連帶(PBC)案은 日本政府에 依하여 發表되었다.⁽⁵⁾ 그러나 前者가 최소한 經濟統合이나 協力의 기구적 태두리를 갖추고 있는 것과는 對照的으로 後者는 日本政府의 立場을 中心으로 各 經濟部門에서 協力を 強調하는 이른 바 白書와도 같은 性格을 띠고 있다.

反面 民間水準에서는 會員國間 經濟關係의 增進을 目的으로 하는 모임들이 組織되어 비교적 꾸준히 會議를 거듭하여 오고 있다. 代表的인 例로서 商工人을 中心으로 하는 太平洋 經濟協議會(PBEC, 1967年) 研究關係人으로 구성된 太平洋貿易開發會議 (PAFTAD, 1968년) 및 보다 多方面의 人事를 포함하는 太平洋經濟協力會議 (PECC, 1980年) 등을 들 수 있다.⁽⁶⁾

이러한 民間會議들이 經濟統合 그 自體와는 純粹적으로 無關하다 하더라도 이에 이를 수 있는 첫 단계의 作業으로서 意義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城內 實質的인 經濟關係의 強化나 그 必要性에 대한 與論의 환기가 先行되지 않는 限 經濟統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없음은 西유럽의 先例를 通하여도 잘 알 수 있다.

물론 總量面에서 城內 經濟·貿易依存度는 이미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⁷⁾ 이는 어디까지나 各國의 美國 및 日本에 대한 偏重去來를 의미하며 그 以外 諸國相互間去來는 그리 큰重要性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民間次元에서 多邊的 協力의 強化를 위한 노력을 朝後 政府水準에서 經濟統合機構의 수립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또 各國 政府가 經濟統合의 추진에 대한 意志나 形態에 대하여 하등의 態度를 밝히지 않고 있는 以上 이러한 類의 시도 밖에 期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시아·太平洋 地域內 經濟統合에 대한 各國 政府의 立場은 여러 論文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⁸⁾ 國際政治·經濟的 比重으로 미루어 美國과 東南亞國家聯合(ASEAN)의 諸國이 決

(4) P. Drysdale and H.T. Patrick, *Evaluation of a Proposed Asian-Pacific Regional Economic Organization*, Australia-Japan Economic Relations Research Project Research Paper, No. 61, Canberra,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uly 1979. 이 以外에도 P. Drysdale, *An 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id and Development, Regional Arrangements and the Resource Trade*, Australia-Japan Economic Relations Research Project Research Paper, No. 49, Canberra, ANU, May 1978; H. Patrick, *United States Foreign Economic Policy towards Japan and the Pacific*, *ibid.*, Nov. 1975 및 K. Kojima, *An 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id and Development, A Proposal*, *ibid.*, Sep. 1976.

(5) 例로 The Pacific Basin Cooperation Study Group, *Interim Report on the Pacific Basin Cooperation Concept* (Translation), Nov. 14, 1979.

(6)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Issues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983, p. 5 以下; 韓國政治學會, 『太平洋地域 協力體制構想에 관한 研究』, 1983 및 OECD, *Pacific Basin Economic Cooperation*, 1983, p. 5 以下 등 參照.

(7) OECD, *op. cit.*, p. 18 以下 및 *PEC Statistics*,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Japan National Committee.

(8) 例로 韓國政治學會, 前揭書, 參照.

定의인 役割을 擔當한다고 綜合될 수 있다. 美國의 傳統的인 國際主義가 地域主義의 統合의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동남아국가연합 가맹제국의 내소날리즘에 기반을 둔 地域主義 또한 統合의 發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두가지 傾向을 理論의 테두리 内에서 검토하고자 하며, 나아가 新國際經濟秩序의 論議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南北間 經濟關係에 있어서 一部 衡平의 原則을 導入하여야만 協力의 強化가 實現될 수 있음을 強調하고자 한다.⁽⁹⁾

II. 工業化와 對外經濟政策

60年代 중반 以後 아시아·太平洋地域內 開途國은 다른 後進國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빠른 速度의 成長率과 工業化를 實現하여 왔다.⁽¹⁰⁾

한 예로 1960~73년과 1973~80년의 두期間을 기준으로 할 때, 全 後進國의 年平均 國內總生產(GDP) 成長率이 각각 3.7% 및 2.7%에 位置하였음에 反하여 同地域內 開途國의 경우 각각 4.7% 및 5.4%를 유지하여 왔다. 또 產業構造에 있어서도 生產이나 고용면에서 製造業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增大됨으로써, 소위 中進國과 동남아국가연합을 中心으로 하는 이 地域 國家들의 工業化가 擴大되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이들 國家의 經濟政策에 있어서 한가지 두드러진 共通點은 거의例外 없이 對外指向的 開發戰略를 추구하여 왔다는 事實이다. 即 中進諸國이 60년대 初·中盤 以後, 그리고 동남아국가연합의 諸國(싱가폴 除外)이 70年代 初 以後, 程度나 內容에 있어서 다소의 差異는 있으나 輸出主導型 戰略으로 轉向하였다. 이에 따라 經濟의 對外貿易依存度는 불가피하게 深化되었는데 이러한 側面은 中南美諸國이나 아프리카諸國의 경우와 對照를 이룬다.

輸出先導型 理論은 이미 50年代 중반부터 學界의 關心을 끌기 始作하였으나⁽¹¹⁾ 國際經濟政策의 次元에서 實제로 論議된 것은 60年代初이며 後進國의 開發과 關聯하여 提出된 1962年の 프레비쉬 報告書는 하나의 轉機를 이루었다.⁽¹²⁾ 유엔貿易開發協議會(UNCTAD)의 設立이나 關稅貿易一般協定(GATT)의 改正(新設 四章의 삽입)등은 그 구체적인 實現이라 할

(9) 本稿에 실린 主張의 一部는 이미 發表된 다음 論文을 補完, 發展시킨 내용임을 밝혀둔다. "Towards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in the Asia Pacific Region," A Paper for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on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Seoul, Korea, October 4-6, 1984.

(10) 註 (7)과 同一.

(11) 例로 R. Nurkse, H. Myint, A. Lewis, J.C.H. Fei, G. Ranis, M. Bruno, A. Strout 등에 의하여 주장된 여러 理論을 들 수 있다.

(12) *Towards a New International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1962, UN,

수 있으며, 後進國의 輸出增大에 이유를 보였던當時 先進國의 立場을反映하기도 한다.

이러한 制度的 改善이 어느 정도 後進國의 輸出擴大를 가져왔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60年代 國際的好景氣와 함께 크게 기여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물론 아시아·太平洋地域內 開途國의 빠른 成長率이나 또는 一部 諸國의 급속한 工業화의 추진이 全的으로 輸出擴大政策에 힘입었다고 斷定하기는 困難하다. 그以外 經濟的 與件이나 經濟政策의 運營은 물론 社會制度, 傳統, 教育 및 文化的 遺產 等과 같이 各國에固有한 非經濟的 要因들도 同時에 作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 傳統的인 貿易·福祉理論의 視角에서 고찰하더라도 輸出支援은 資源配分面에서 輸入代替政策 못지 않게 經濟內에 歪曲을 가져오며⁽¹³⁾, 이러한 否定的인 側面에 對한 綜合的인 分析은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理論的으로 兩政策間 優劣를 評價하기는 困難하며 결국 長期的으로는 均衡과 調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巨視經濟的 成果에 있어서 輸出主導政策이 輸入代替政策에 比하여 아직까지 보다 나은 結果를 가져왔다고 判斷되고 있다.⁽¹⁴⁾ 물론 이러한 評價가 다소 이론 感이 있기는 하나 아시아·太平洋地域內 開途國들로 하여금 對外指向的 開發戰略을 계속해서 追求하게 하는 자극제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輸出主導政策이 優先되는 論理의 根據는 무엇보다도 規模의 經濟, 競爭力의 強化 및 外貨收入의 擴大 등과 같이 주로 動態的 利得이 強調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論理에서 본다면 地域內 開途國들은 工業化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對外經濟政策을 적극적으로 活用하며 따라서 安定的인 外國市場의 確保는 그만큼 중요한 課題로 등장한다는 결론에 到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太平洋地域은 한 단위로 할 때 유럽共同體(EC)와 비교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능가하는 市場規模를 갖고 있으며, 또 高度의 成長潛在力を 保有하고 있다는 點은 地域內 經濟統合을 推進하는 데 있어서肯定的인 要因으로 作用한다고 볼 수 있다.⁽¹⁵⁾

人口 및 總所得面에서 同地域은 世界最大의 市場을 구성하며 美國 및 日本 등 先進諸國의 낮은 貿易依存度로 因하여 貿易規模가 유럽共同體 제국에 比하여 다소 뒤지고 있다. 물

(13) A.O. Krueger, *Export-Led Industrial Growth Reconsidered*, in W.T. Hong and L.B. Krause, ed., *Trade and Growth of th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acific Basin*, 1981, KDI, p. 31 以下。

(14) 例로 *Ibid.*, p. 8 以下。

(15) 抽稿, 「太平洋地域內 經濟統合의 推進에 관한 評價」, 『安堂申泰煥博士·古稀記念論文集』, 1982, p. 394 參照。

본 城內 經濟에서 美·日 兩國이 壓倒的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統合의 推進이 실현될 수 있다면 그만큼 市場擴大의 效果를 가져 올 수 있다.

한편, 많은 長期展望 報告書가 指摘하고 있거나와⁽¹⁶⁾ 大部分의 國家가 50年代 以後에도 높은 成長率을 유지함으로써 아시아·太平洋 地域은 世界成長을 유도하는 하나의 軸으로 登場할 可能性이 크다.

유럽共同體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同 地域은 先進工業國, 中進國 및 開途國등 극히 多樣한 經濟를 포함하고 있으며 賦存資源面에서도 補完的이다. 이러한 側面이 經濟統合의 進行에 있어서 否定的인 要因이 될 수도 있기는 하나, 그 運營邏輯의 설정 여하에 따라서는 城內 國家들의 成長 및 開發을 促進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重要한 課題의 하나는 세개의 相異한 經濟圈사이에 動態的인 比較優位理論에 입각하여 어떻게 特化가 이루어지며, 또 이를 원만한 方向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關聯國들이 얼마나 協力を 強化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III. 經濟統合의 政治經濟的 側面

엄밀한 意味에서 아시아·太平洋地域內 全體로서의 經濟統合의 實現은 요원한 일이며 그 보다는 그 前段階로서 地域內 經濟協力を 強化할 수 있는 태두리를 설정하는 과정부터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逆機能的으로 作用할 수 있는 가장 重要한 要因은 城內 各國의 政治·外交的인 立場이라 할 수 있다. 東南亞國家聯合 諸國과 같은 一部 國家는 地域內 多邊的인 協力의 태두리에 參與한다는 自體가 外交路線에 대한 態度 表明을 의미함으로써 所謂非同盟의 立場에 영향을 주게 되고 나아가 東北亞 勢力均衡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表明하고 있다. 따라서 地域內 特定의 經濟協力體에 同調하여 ‘自國이 願하지 않는’ 政治·外交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는 없다고 強調하고 있다.⁽¹⁷⁾

그러나 經濟協力의 意義를 어찌한 觀點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結論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卽 經濟協力의 취지가 關聯國 相互間 利益의 實現에 있다고 한다면 이를 通하여 오히려 地域內 政治的 安定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 여기에서 機能主義的 接近

(16) 例로 W. Leontief,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UN, 1977 및 O. Barney, *The Global 2000 Report to the President of the USA*, 1982.

(17) H. Soesastro, *Institutional Aspects of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in H. Soesastro and S.J. Han, ed.,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983, CSIS, Jakarta, p. 49.

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유럽식 탄강철공동체(ECSC)로 부터 進行되기 시작한 西유럽의 經濟統合이 그 代表的인例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1952년 탄생된 유럽식 탄강철공동체의 설립취지는 두 가지이다. 그 첫째는部分的 統合接近에 의하여 석탄과 강철제품의 두 部門에 있어서 共同市場을 形成함으로써 市場擴大에 수반되는 동태적 이익을 얻자는 데 그 目的이 있다. 會員國間 自由移動을 보장하며 獨과점은 禁止하고, 그 以外 정부보조, 정부구입, 運送部門, 企業體의 價格決定 및 貨金等 關聯 諸部門에서 政策的 調整과 接近이 시도되고 있다. 그 밖에도 會員國內의 生產, 消費 및 輸出入 등에 관한 情報의 交換은 물론 周期的으로 展望이 作成, 發表되고 있다.

둘째, 政治的인 次元에서 重武器 原料인 兩部門에 대한 이러한 共同管理는 戰爭의 事前防止, 肯定的으로는 平和定着의 效果를 가져 온다. 世界大戰의 根源地라 할 수 있는 佛·獨 國境地域內 석탄·강철 生산물에 대한 共同市場의 설립을 提案하면서 슈만·풀랜(Schuman plan)은 “戰爭을 상상할 수 없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物理的으로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點을 극히 강조하였다. ⁽¹⁸⁾

유럽防衛共同體(EDC)의 설립이 失敗하자, 유럽聯邦主義者들은 政治統合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석탄 및 강철部門 以外 경제통합을 全부門으로 擴大한다는 新機能主義의 接近을 擇하였으며 이러한 努力의 所產으로 1958年 유럽經濟共同體(EEC)가 탄생하였다. 따라서 유럽 경제공동체의 創設이 단순히 經濟同盟의 形成을 通한 이익 뿐만아니라 궁극적으로는 平和의 定着, 나아가 유럽의 政治統合에도 그 취지가 있다.

물론 이러한 市場統合의 努力은 유럽 固有의 歷史와 與件의 離別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비록 制限의이라 하더라도 유럽 統合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結論의 一部는 아시아·太平洋地域에 있어서도 適用될 수 있다고 본다. 나중에도 言及되겠으나 協力體가 體制를 달리하는 모든 沿岸國家들을 포함하고 또 地域의 特殊性에 맞는 組織한 形態와 運營 메카니즘을 선택할 수 있다면, 經濟部門에서의 協力, 協議 및 調整 등의 과정은 결국 政治·軍事的 安定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原論의in 公式에는 異議가 있을 수 없다. 卽 一部 國家가 政治·外交의in 고려로 因하여 地域內 協力體에 참여하기를 꺼려 한다면, 이러한 制約은 오히려 모든 關聯國들간 多邊的in 經濟的 利益의 追求를 通하여 克服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형평의 原則에 입각하여 相互利益을 가져올 수 있는 多邊的in 經濟協力의 대두리가 設定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더구나 同地域이 多樣한 經濟로 구성되

(18) J. de Soto, *La CECA*,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5, Paris, p. 9.

었다는 點에서 比較的 同質의 經濟間 協力의 경우와는 다른 固有한 形態를 取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IV. 國際主義의 限界

아시아·太平洋 地域內 經濟協力, 내지는 統合機構의 推進에 있어서 美國의 參與는 중요 한前提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美國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留保的인 立場을 取하고 있는데 그 背景은 表面上으로는 同國이 傳統的으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國際主義 問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50年代末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自由貿易聯合(EFTA)設立을契機로 美國은 地域主義에 참여하지 않음은 물론 無差別原則에逆行하는 어떠한 地域經濟圈의 形成에도 反對하겠다는 態度를 밝혔다.⁽¹⁹⁾

그러나 美國의 이러한 國際主義는 두가지 側面에서 批判될 수 있다. 첫째는 美國式의 极히 이상적인 多邊主義가 과연 지켜져 왔는가, 또는 實現될 수 있는가 하는 點이다. 둘째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地域主義의 追求가 國際主義에 항상 어긋난다고만 할 수 있는가하는 問題이다. 即 地域主義에 대한 概念 定義 自體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特定 國家間 經濟機構의 설립을 모든 경우 同一視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論議가 提起될 수 있다.

1. 國際主義의 虛像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美國 對外經濟政策의 基調는 총체적으로 1930年代初 民主黨政權의 登場과 함께 그 기반이 確立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當時 商務長官 헬(C. Hull)의 提議에 따라 제정된 相互貿易協定法(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 1934)은 從前까지의 고립주의에서 탈피하여 보다 國際主義에 의한 指向을 뜻하기도 한다.

1920~30년대 모든 國家가 輸入制限을 強化함으로써 保護主義추세가 全에 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美國이 오히려 國際主義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는 事實은 逆說的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美國이 自由貿易主義로 轉向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當時까지 強化된 保護主義를 背景으로, 그리고 國內 賦存資源 및 去來規模面에서 相對的으로 有利한 協商權을 바탕으로 對象國의 輸入制限 완화를 要求하는 이른 바 協商關稅政策(bargaining tariff policy)을 擇하였다.

戰後 수립된 IMF-GATT體制는 1920~30년대 市場分割을 가져오는 保護主義를 克服하고

(19) 例로 美國務省이 當時 發表한 *US Views on European Common Market and Free Trade Area*, Dept. State Bulletin, XXXVI, 1957, p.182에 이러한 취지가 明白히 나타나 있다.

공정적으로는 無差別과 互惠性에 입각하여 自由貿易主義를 實現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또 美國의 傳統的인 國際主義의 中요한 內容이 同體制에 거의反映되고 있음도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IMF-GATT體制는 수립 初期부터 이를 主動한 先進工業諸國들에 依하여 그 原則이나 規定들이 엄격히 준수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代表의 例가 舊유럽經濟協力機構(OEEC)(1949年 設立)의 機能이다. 西유럽諸國을 포함하였던 同機構는 貿易(주로 輸入量制限政策) 및 通貨(國際決濟)面에서 會員國에게 特惠를 留保함으로써 域外地域에 대하여는 相對的으로 차별대우를 適用하였다.⁽²⁰⁾ 물론 이러한 差別待遇가 50년代末에는 部分的으로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엄밀하게는 國際主義와 兩立될 수 없었으며 美國은 의도적으로 이를 도와 주었다.

戰後 美國의 對外經濟政策이 政治, 軍事的 考慮에 依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특히 西유럽에 局限한다면 經濟的 地域主義의 追求가 西方의 團結을 가져온다는 點에서 政治軍事的인 側面에서 바람직하였으나 美國을 비롯한 域外國家에 대하여는 差別待遇를 의미하게 되므로 결국 兩面性을 떨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모호한 立場은 西유럽이 유럽經濟 공동체와 유럽自由貿易聯合과 같은 두개의 經濟統合圈으로 分立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始作했으며 여기서 經濟的인 觀點에서 國際主義와 地域主義間 兩立可能性에 관한 論爭이 登場하였다.

關稅貿易一般協定(GATT)은 經濟統合機構로서 古典的인 形態라고 할 수 있는 自由貿易地域과 關稅同盟의 形成을 許容하고 있다. 即, 無差別原則에 따라 特惠는 禁止하나 一定會員國間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完全特惠地域’을 최소한 수립해야 한다는 條件이다. 따라서 自由貿易地域 以上的 經濟統合은 無差別原則의 適用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²¹⁾

國際主義와 關聯시켜 관세무역일반협정은 이러한 經濟統合의 추진이 會員國間 貿易의 增大에 그 목적을 두어져야 하며 非會員國과의 貿易은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는 바이너(Viner)－미드(Meade)－립시(Lipsey)로 이어지는 이론바 自由貿易主義의 統合論者들이 主張하는 바와 같이 貿易創出(trade creation) 效果와 貿易轉換(trade diversion)效果間의 比較를 의미하며 또 次善理論(second best theory)에 기초한 經濟統合을 전의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20) 많은 學者가 이러한 見解를 피력하고 있다. 例로 B. Ohlin, *La Politique du Commerce Extérieur*, Dunod, 1955, Paris, p. 197 以下 및 G. Patterson, *Discrimination in International Trade Policy Issues, 1945~1965*,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p. 75. 以下 參照.

(21) GATT XXIV條.

그러나 국제주의적 視角에서 이와 같이 단순한 論理에 입각하여 經濟的 地域主義의 有效性을 評價한다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理論的 實際的인 問題가 있음을 指摘하지 않 을 수 없다.

① 이미 여러 實證分析들이 시도되어 왔거나와 정태적 側面에 局限하더라도 經濟統合의 推進이 城內・城外 貿易에 미치는 效果를正確히 計算한다는 것은 決코 용이하지 않다.⁽²²⁾ 또 그 結果를 해석하고 이를 政策的으로 反映하는 데에도 여러 方法이 있을 수 있다.

② 國際貿易에 대한 效果를 測定하기 위하여는 貿易創出・轉換效果 뿐만 아니라 市場의 擴大에 따른 動態的인 效果가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例로 비록 貿易轉換이 있었다 하더라도 經濟統合의 努力에 따라 成長이 促進되었다면 域外諸國으로부터의 輸入需要가 擴大됨으로써 그만큼 否定的인 效果를 相殺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③ 관세무역일반협정은 貿易轉換效果를 극소화 할 수 있는 對案의 하나로 “統合推進 以前에 比하여 對外貿易政策이 보다 自由主義的이어야 한다”는 點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基準設定이 애매하다. 유럽經濟共同體의 설립 과정에서 크게 論難의 對象이 되었으나 例로 對外共同關稅를 수립할 경우 會員國의 關稅率을 단순 平均할 것이냐, 아니면 加重平均值를 求할 것이냐 하는 選擇은 그 나름대로 長・短點을 갖고 있다.

④ 地域主義의 전형적인 形態로서 關稅同盟과 自由貿易地域이 例로 引用되고 있으나 現代의in 意味에서의 經濟統合은 共同市場 및 經濟同盟은 물론 그 以外에도 복잡・다양한 模型이 擇해 질 수 있다. 國際主義라는 단순한 觀點에서 과연 설득력있게 이러한 統合模型을 評價할 수 있을 것인가? 複雜한 經濟的 現象을 形式的, 法的 또는 外交的인 基準으로 判斷하는 데에는 無理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 以外에도 大部分의 경우 그러하겠으나 特定經濟統合이 國際貿易의 흐름에 저해되는 가의 여부에 대하여 會員國과 非會員國間 見解가 엇갈린다면 이에 대한 解決策은 결국 一 種의妥協에 依存하는 수 밖에 없다. 유럽經濟共同體와 유럽자유무역연합의 先例에서도 볼 수 있듯이 經濟統合을 내용으로 하는 地域主義가 美國式의 國際主義와 兩立될 수 있느냐는 問題를 客觀的으로 評價할 수 있는 基準은 극히 모호하다. 뿐만 아니라 一部 國家가 地域主義를 追求하는 경우 國際經濟的 次元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實質的인 수단도 存在하지 않는다.

유럽經濟共同體가 탄생한 후 經濟統合이라는 名分아래 地域主義는 급속히 擴散되어 왔다.

(22) 例로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The Trade Effects of EFTA and the EEC*, 1959~1967, 1972 參照.

中南美 地域 및 아프리카 地域內 後進國間 經濟統合이 시도되고 있는가 하면 유럽經濟 공동체는 自由貿易地域, 準會員國 制度 및 貿易·經濟協力 등을 내용으로 하는 多複한 形態의 協定을 체결하였다.

라틴아메리카 自由貿易聯合(LAFTA)의 創設을 비롯하여 自由貿易地域, 關聯同盟, 共同市場 및 經濟同盟等 第3世界가 推進하고 있는 大部分의 經濟統合은 그 의욕적인 명칭에도 불구하고 거의例外없이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適當한 期間內’ 設立되어야 한다는 관세무역일반협정의 要求를 充足시켜 주는 經濟統合의 例가 全無하다는 點에서 이제는 하나의 단순한 特惠地域으로 그 기반을 굳히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유럽무역개발협의회가 設立되면서부터 後進國間 經濟統合의 시도는 開發促進을 위한 수단으로도 登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國際主義가 임밀하게 適用되지 않음으로써例外의인 許容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럽經濟 공동체는 1977年 7月 以後 유럽自由貿易聯合地域과 自由貿易地域을 設定하였으며, 나아가 아프리카, 카리브 및 太平洋地域(A.C.P.)을 비롯한 大部分의 開途地域과 同種의 協定締結을 通하여 去來의 擴大를 모색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協定들의 거의 全部가 國際主義가 許容하고 있는 地域主義의 條件을 充足시킨다고 보기는 힘들며 보다 特惠의 交換이라는 성격을 強하게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2. 國際主義와 地域主義

事實 美國이 구상하는 式의 國際主義는 하나의 理想에 불과하여 現實的으로 實現될 수 있기에에는 許多한 制約이 따른다. 바꾸어 말한다면 國際主義와 地域主義를 區分하는 기준自體가 모호하며 너무나 인위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國際主義의 構圖는 간단하다. 貿易去來에 局限할 때 모든 國家가 모든 다른 國家에 대하여 貿易政策에 있어서 同等待遇를 해 주며 (所謂 最惠國待遇), 互惠에 입각한 相互協商에 依하여 무역장벽을 逐步 引下 내지는 철폐함으로써 完全自由化를 達成한다는 내용으로 総合될 수 있다.

우선 여기서前提로 하는 貿易政策의 수단이 關稅를 主對象으로 하고 있음을 물론이다. 關稅에 限定한다면 이러한 原則이나 機能이 비교적 成功을 거두어 왔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國際貿易의 擴大를 저해하는 중요한 要因으로 登場하지도 않고 있다. 問題는 非關稅 障壁으로서 第6次 世界貿易協商인 ‘캐네디協商’에 이르러 최초로 완화 또는 調整을 위한 교섭의 대상이 되었으나 하등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이 各國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特定 經濟目的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使用된다는 點에서 關稅의 경우와 같이 多邊協商에 依하여 점차 완화되기를 期待하기도 困難하다. 그러나 非關稅障壁이 性質上 對象國別로 差別的으로 適用될 수 밖에 없으며 80年代에 들어서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新保護主義의 中요한 政策手段이 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구나 美國自身이 國內 經濟隘路를 克服하려는 目的으로 이러한 類의 非關稅障壁에 크게 依存하고 있으며 또 自由貿易主義에 同調해 온 大部分의 失進諸國이 新保護主義에 기울고 있다는 事實은 矛盾이 아닐 수 없다.

다른 한편, IMF-GATT體制가 追求하고 있는 國際主義는 모든 國家가 비슷한 經濟的 與件에 있음을前提로 하지 않고서는 達成될 수 없는 理想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또 特定 地域에 屬하는 뜻을 같이 하는 國家間 無差別原則에 依한 國際去來의 自由化보다 빠른 速度로 무역장벽을 引下하고자 하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制約을 解決하기 위한 對案의 하나로 許容된 것이前述한 마와 같은 조건부적 地域主義이다. 그러나 非伸縮의 國際主義를 固守할 수 없다고 하여 地域主義를 放置하기始作한다면 國際主義의 原則이 준수될 수 없는 一種의 딜лем마에 處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오히려 地域主義를 보다 肯定的인 側面에서 評價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結論에 到達한다.

事實 2次大戰 以後 수립된 國際主義는 1920~30年代 市場分割과 國際去來의 위축을 가져온 갖가지 형태의 保護主義를 저지하자는 데 그 중요目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곧 地域主義 自體가 國際主義에 반듯이 어긋난다고는 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 형태나 취지가 근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點을 示唆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地域主義를 形成하는 意圖나 또 適切한 運營에 따라서는 國際主義를 達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選擇이 될 수도 있다는 逆이 成立한다.

다시 말하여 너무나도 多樣한 經濟로 構成된 現 國際經濟에 있어서 國際去來의 自由化 및 擴大는 뜻을 같이 하는 國家들을 포함하는 地域主義를 점진적으로 擴大함으로써 實現될 수 있다. 對象國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參與國間相互利害의 調整이나 合意가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이러한 側面은 凡國際的인 次元에서는 期待하기 어려운 利點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長期的으로는 國際經濟의 利益을 가져올 수 있는 善意의 地域主義擴散만이 결국 엄밀한 의미에서의 國際主義를 실현할 수 있는 實質的인 對案이라고 생각된다.

그以外 최근 國際經濟秩序의 추이를 보더라도 善意에 입각한 地域主義의 追求는 國際去來의 擴大에 기여할 수 있는 長點을 갖고 있다.

첫째, IMF-GATT體制가 특히 70년대초 以後 그 原則이나 機能이 크게 마비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最近 先進諸國 또는 第3世界에 依하여 새로운 體制의 수립이 論議되어 오고 있는데 아시아·太平洋 地域으로 그 범위를 좁힌다면 多樣한 經濟圈間 妥協의 모색은 보다 용이해 질 수 있다.

둘째, 70년대 중반 以後 深化一路에 있는 新保護主義를 우회하거나 克服할 수 있는 方法 中의 하나는 地域내에 인접해 있는 國家間 協力を 강화하는 길이다. 國際景氣의 침체가 構造的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보호주의적 傾向 역시 지속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域內 會員國間 긴밀한 協力を 通하여 經濟去來의 擴大를 가져올 수 있는 테두리의 설정은 그 취지나 운영 메카니즘에 따라 凡世界的인 次元에서 國際去來의 自由化 및 分業의 促進에도 기여할 수 있다.

V. 東南亞國家聯合을 通한 經濟統合

아시아·太平洋地域은 經濟統合機構를 갖지 않은 거의 唯一한例外에 屬한다. 단지 동남 아국가연합만이 1976년 以後 會員國間 經濟協力의 強化를 시도하는 기구로 존속하여 오고 있다.

當初 동남아국가연합은 政治, 社會 및 文化 등 諸分野에서의 協力を 축지로 出發하였으나 76年 2月 巴厘에서 開催된 第1次 頂上會談을 계기로 經濟關係의 增進에 置重하게 되었다. 이러한 方向轉換의 背景에는 印度차이나 半島 및 中共과의 外交가 安定을 되찾았다는 政治·軍事的 要因 以外에도 經濟開發을 위한 共同意慾, 原油를 비롯한 資源波動, 그리고 保護主義의 擴散과 같은 國內外 經濟的 與件의 變化에 따라 會員國間 共同行動의 必要性이 強調되기 始作했기 때문이다.

同 頂上會談에서는 協力의 推進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東南亞友好條約’과 ‘東南亞國家聯合協調宣言’이 採擇되었다.

1. 經濟統合의 深化

특히 ‘東南亞國家聯合協調宣言’(一名 ‘巴厘’宣言)은 經濟開發의 促進이라는 會員國 共同目標의 실현을 위하여 의욕적인 行動計劃을 採擇하였다.⁽²³⁾ 그 重要內容은, ① 重要1次產品에 있어서 緊急融通制度, ② 共同 工業프로젝트의 推進 및 ③ 貿易特惠의 擴大 등으로 要約된다. 그 以外 一部 機構의 개편이 있었으며, 民間次元에서 東南亞國家聯合 商工會議所聯

(23)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 Years ASEAN, 1978, Ch. 8. ASEAN 事務局은 매년 數種의 보고서를 發刊하고 있다. 한 예로 Standing Committee의 최근 活動에 관하여는 Annual Report of the ASEAN Standing Committee, 1982~1983을 參照하기 바란다.

合이 설립되어 產業補完計劃(Industrial Complementation Schemes)가 推進中에 있다.

總體的으로 볼 때 동남아국가연합은 實質的으로 다른 後進諸國間 經濟統合의 例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업적을 이룩하고 있다고 評價될 수 있다. 그러나 ‘開發創出’(development creation)이라는 共同目標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協力を 強化하고자 한다면 統合을 보다 深化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얻을 수 있는 利得은 더욱 擴大될 수 있다. 이러한 側面에서 볼 때 동남아국가연합은 經濟統合을 推進하기 위한 適切하고도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수립하고 이를 效率적으로 遂行할 수 있는 體系의in 努力を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開途國間 經濟統合에 관한 理論은 60년대 중반 以後 많은 學者들에 依하여 다루어져 왔으며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經濟的 利益도 크게 強調되고 있다. 大多數의 理論이 開途國間 統合에 따르는 特有한 側面에 대하여 分析을 시도하고 있으나 根本的인 接近方法 自體에 있어서는 先後進國의 경우를 막론하고 큰 差異가 있을 수 없다.⁽²⁴⁾ 即 經濟的 利益을 가져오는 原動力은 經濟的 效率性과 廣域市場의 形成이라는 두가지 要素로부터 發生한다. 古지 開途國間 統合에 있어서는 非會員國에 대한 域內市場(工業) 保護의 水準, 그리고 經濟的 利益配分 메카니즘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 理由는 開途國이 多小의 國民所得(例로 輸入에 依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을 희생하더라도 工業化를 이룩한다는 데 그만큼 價值을 두기 때문이다.⁽²⁵⁾

이와 같이 살펴 볼 때, 後進國間 統合의 形態나 過程은 先進國의 경우에 比하여 다를 수 밖에 없으며 또一律的인 模型을 取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大部分의 동남아국가연합 諸國이 經濟開發計劃을 推進하고 있으므로, 會員國間 經濟政策에 관한 協議, 協力 및 調整을 기할 수 있는 메카니즘의 설립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點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또 各國內 市場이 政府의介入을 비롯한 多樣한 形態의 歪曲으로 特徵지워지며 外貨不足 및 經濟不安 등의 問題를 안고 있기 때문에 統合을 指向하는 경우 더욱 불가피하게 보여진다.

따라서 統合計劃에 있어서는 廣域市場을 對象으로 하는 產業의 立地選定과 會員國間 適切한 补償 메카니즘의 두가지 要素가 최소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西유럽의 경협과는 달리 共同市場과 經濟同盟의 내용을 經濟部門別로 同時に 점차 擴大시키는 部分的 接近方

(24) Ali M. El Agra,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McMillan, 1982, p. 24-25에서도 비슷한 見解가 피력되고 있다.

(25) F. Andic et. al., *A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G. Allen and Unwin, 1971, p. 17 參照.

式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본다. 물론 初期에는 各國의 經濟的 與件을 고려하여 統合對象을 限定시키고 그 成功如何에 따라 生產物과 生產要素의 自由移動을 단계별로, 그리고 部門別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

아프리카나 中南美 諸國內 經濟統合이 不振한 중요한 理由中의 하나는 이와 같이 開途國間 統合에 있어서 要求되는 特有의 側面이 充分히 고려되지 않았던 데에도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自由貿易聯合의 實現이 失敗로 돌아가 81년 以後 라틴아메리카 統合聯合(LAIA)으로 變形하였다는 事實은 政策的 調整이나 형평에 입각한 利益의 配分 原理가니즘이 決定的으로 중요한 要素임을 다시 한번 말하여 준다.

다른 한편, 내셔널리즘과 같은 非經濟的 要因 또한 統合을 저해할 수 있다는 點을 간과 할 수 없다. 即 經濟統合過程이 會員國들로 하여금 國民統合이나 經濟主權에 대한 침해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開途國의 경우 더욱 현저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事實 經濟統合은 그 推進에 따라 經濟政策과 關聯된 各國政府의 意見決定權에 多小의 制約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會員國間 모든 決定이 萬場一致에 依하여 取해지거나 또는 비토(Veto)權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국이 除外될 수 있다면 經濟主權에 대한 침해와 같은 문제는 提起되지 않는다. 오히려 統合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는 經濟的 利益과 市場의 擴大는 各 會員國의 내셔널리즘을 充足시킬 수 있는 肯定的인 要因으로 作用할 수도 있다.

2. 統合의 擴大

다음 동남아국가연합이 經濟統合을 深化한다는前提 아래 그 對象國이 再考될 수 있다. 동남아국가연합은 本質上 排他的인 機構는 아니며 共同目標에 同調한다면 아시아·太平洋內 모든 國家에게 門戶가 開放되어 있다. 太平洋 經濟共同體의 構想과 關聯하여 東南亞國家聯合 諸國이 1981年 방콕會議에서 採擇한 5個의 條件은 同 機構의 擴大를 위한前提로 이해될 수 있다. 그 중 2個條件이 經濟的 內容을 갖고 있는데 첫째, 東南亞國家聯合이 太平洋共同體에 參與할 수 있으려면 이에 따르는 '費用을 크게 능가하는 利益이 保障' 되어야 하며, 둘째 東南亞國家聯合의 '存立이나 번영' 自體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²⁶⁾

우선 追加的인 利益의 實현이豫想되지 않는다면 東南亞國家聯合 諸國이나 다른 城內國家의 立場에서 同機構의 擴大가 何等의 意味를 가질 수 없음을 물론이다.

統合理論에 따른다면 市場이 커질수록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利益은 增加될 수 있다. 또 開途國의 경우, 產業構造가 補完的 性格을 갖는다면 잠재적인 이익은 더욱 增大되는데

(26) H. Soesastro, *op. cit.*

東南亞國家聯合 會員國과 城內 非會員國間 經濟가 보다 補完의이라는 事實은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 問題는前述한 바와 같이 開途國間 統合의前提인 諸條件이 協商을 通하여 充足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다음 東南亞國家聯合이 아직 짧은 歷史를 갖고 있으며 經濟統合을 세로이 發展시켜 나간다면 會員國의 擴大로 因하여 그 기반이나 결속이 와해될 우려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經濟統合이 優先的으로는 工業化水準이 그래도 比較될 수 있는 國家間 限定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地域內 非會員國은 韓國, 臺灣 및 香港 등 一部 開途國만이 東南亞國家聯合에서 除外되고 있다. 또 이 國家들의 賦存資源 및 產業構造面에서 東南亞國家聯合 諸國의 경우에 比하여 大部分 補完의므로 統合에 따르는 所得은 그만큼 增大될 수 있다.

물론 이 國家들이 處한 相異한 經濟的 與件이나 그 以外 非經濟的 要因도 고려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何等의 先行條件 없이 東南亞國家聯合에 加入하기는 困難하다. 協商에 따라 그 條件이 決定되겠으나 이 國家들과 東南亞國家聯合 가맹국간 特定 產業部門에서의 協力, 部門別 特惠協定을 비롯한 多樣한 協力を 通하여 一定 過渡期間을 설정하여 단계별로 加入을 推進해 나갈 수 있다. 또 準會員國과 같은 形態의 헤드리도 하나의 對案이 될 수 있다.

反面 地域內 社會主義諸國(例로 中共, 北韓 및 베트남 등)의 對 東南亞國家聯合 關係는 異質體制라는 點에서 別途의 고려를 必要로 한다고 본다.

事實 城內 開途國 市場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政府介入이 두드러지기는 하나 原則的으로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하고 있다. 또 經濟統合 그 自體는 原論의으로 市場經濟를 前提로 하고 있으며 比較優位에 따른 國際分業의 促進을 취지로 하고 있다.

例로 相互經濟援助會議(CMEA)의 경우를 보더라도 同質의 經濟體制로 구성되었으나 經濟統合의 推進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限界에 이르렀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城內 社會主義諸國이 計劃經濟를 유지하는 限 東南亞國家聯合에 參與하기는 困難하다는 結論을 내릴 수 밖에 없다.

물론 異質體制가 經濟去來의 擴大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 동남아 국가연합과 社會主義諸國間 음지벼와 같은 特殊한 關係를 形成함으로써 協力의 強化를 시도할 수도 있다.

VI. 新로운 國際經濟秩序의 摸索

아시아·太平洋 各國間 相互 經濟依存度는 급속히 提高되어 왔다. 例로 城內 貿易이 各

國의 對外貿易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平均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美國의 경우에 있어서도 1976年 以後 對유럽 共同體貿易을 上廻하고 있다.

이와 같이 地域內 相互經濟依存이 深化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어떠한 形態의 協力 테두리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域內 特有의 경제적 與件을 고려하여 經濟協力機構의 推進은 適切한, 그리고 獨特한 形式과 內容을 갖추어야 하며 단계별, 部門別로 實現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協力은 衡平의 原則에 입각하여相互 經濟的 利益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몇 가지 重要한 原則과 機能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經濟統合의 深化가 開發利益을 가져올 수 있는 以上, 東南亞國家聯合의 諸國은 이를 推進할 수 있는 구체적인 計劃과 目程을 수립하고 適切하게 同機構를 개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統合努力이 成功的으로 遂行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市場統合 그리고 經濟政策調整과 함께 이에 따르는 利益을 균형있게 配分할 수 있는 이론바 파레토 最適的 인 補償 메카니ズم이 수립되어야 한다.

아시아·太平洋地域 開途國間 經濟統合은 東南亞國家聯合이 이미 協力機構로서 그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點에서 이를 中心으로 展開되어야 한다. 一部 非會員國이 東南亞國家聯合에 단계별로 加入할 수 있다면 其他 諸國은 政治的 또는 經濟的 要因으로 因하여 適切한 形態의 기구적 유대를 가질 수 있다.

經濟統合을 推進하기 위한 前段階로서 經濟·技術協力의 強化는 물론 補完的으로 金融·通貨部門에서의 相互 支援도 效率的이라고 본다. 다른 地域內 經濟統合의 經驗에서도 알 수 있듯이 清算 或은 支拂協定은 通貨價值의 安定, 貿易增大 및 決濟費用의 節減 등의 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²⁷⁾

(2). 域內 先進諸國間 經濟統合과 關聯하여 日本의 小島清教授는 이미 60年代 중반 유럽 經濟共同體를 模型으로 한 太平洋自由貿易地域(PAFTA)를 提案하였다. 同案에 따르다면 先進諸國間 自由貿易地域의 設立을 推進하고 後進國에 對하여는 準會員國으로 대우하되 經濟·技術協力を 提供한다는 內容이다. ⁽²⁸⁾

그러나 先進諸國에 局限할 때 自由貿易地域은 특히 70年代末 東京라운드의 終結以後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고 본다. 關稅가 國際貿易을 저해하는 實質的인 장벽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함에 따라 非關稅政策을 調整내지 완화하기 위한 協力의 強化가 더욱 強調되고 있다.

무엇보다 先進諸國간 相互 共同關心事를 論議하기 위한 機構的 모임이 必要하며 域內 開

(27) 例로 EEC, EFTA 및 CACM의 경우.

(28) K. Kojima, *op. cit.*

途國들은 議題에 따라 이에 참여 할 수 있는 機會를 갖는 것이 더 實效性이 있다고 생각한다.

(3). 地域內 先進國과 開途國間 經濟協力에 관하여는 이미 자주 논의되어 왔으며 또 구체적인 對案들까지도 提示되고 있다.⁽²⁹⁾ 단지 衡平의 原則에 입각하여 몇가지 바람직한 基本的인 政策方向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자 한다.

1) 아시아·太平洋地域內 經濟去來가 相對的으로 빠른 速度로 增加하여 음으로써 經濟的 依存度가 그만큼 深化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이와 同時에 이러한 經濟去來가 恒常 對象國들에게 만족스럽게 發展하여 오지만은 않았으며 不均衡을 누적시켜 왔다는 點 또한 否認할 수 없다. 一部에서 指摘하다시피 이와 같은 현상은 ‘不便한 相互依存’이라고도 定義될 수 있다.

만약 經濟去來가 對象國들에게 相互 만족스럽고 相對的인 의미에서의 公平한 利益을 가져올 수 없다면 이러한 經濟關係의 意義는 크게 상실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例로 地域內 開途國들이 거의例外 없이 對日本貿易의 發展過程에서 大規模의 赤字를 누적시켜 왔고 이는 國際收支壓力으로 因하여 經濟去來의 擴大에 있어서 制約要因으로 登場하고 있다.

先·後進國間 經濟關係에서 단순한 互惠性은 適用될 수 없으며 오히려 後者의 開發創出을 위하여 前者が 더 많이 양보를 함으로써 去來의 擴大를追求할 수 있다. 地域內 兩經濟 圖間 經濟協力은 “開途國의 工業化에 우선적으로 그 취지가 두어져야 한다. 長期的 次元에서 共同利益과 共榮을 위하여 先進諸國 등 나은 與件에 있는 者가 양보하여야 한다”(“Noblesse oblige”)는 精神에 입각하여 協力を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2) 協力의 形態는 相互 經濟的 利益을 實現하는 同時に 經濟主權을 保障할 수 있도록 進行되어야 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資源開發, 產業再調整, 技術移轉, 一次產品 價格의 安定 및 多國籍企業의 投資活動 등과 같이 共同 關心部門에서의 各國間 協定締結은 하나의 現實的인 代案이 될 수 있다.

3) 아시아·太平洋地域內 經濟協力의 發展은 既存 經濟秩序의 運營과 기능에 상치되어서는 안된다.

事實 同地域은 多樣한 經濟를 포함하고 있어 國際經濟의 縮小版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理想的인 協力의 테두리도 보다 용이하게 수립될 수 있다.

本稿에서 論議된 經濟協力의 方向은 총체적으로 IMF-GATT의 原則에 부합되며 ‘小數의 法則’에 依하여 유엔貿易開發協議會와 같은 國際機構가 當面하고 있는 課題에 대한 해결

(29) H. Soesastro and S.J. Han, ed., *op. cit.*

책도 쉽게 보색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同 地域內 成功的인 經濟協力의 遂行은 오히려 凡 國際的인 次元에서의 去來增進은 물론 開發을 위한 새로운 戰略의 追求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

4) 地域內 大部分의 國家가 工業化에 經濟政策의 우선을 두고 있으므로 貿易은 垂直分業보다는 工業部門에서의 分業을 促進한다는 原則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原則을 實現하기 위하여는 關聯國間 合意가 이루어져 意識的인 共同行動을 通하여 特化의 動態的側面을 고려하고 또 비교우위의 원활한 移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協調하지 않으면 안된다.

5) 끝으로 地域內 經濟協力의 領域가 설정되면 共同目標를 追求하는 데 同調하는 限政治經濟體制의 相異를 불문하고 모든 國家에게 그 門戶가 開放되어야 한다.

VII. 뜻 음 말

그간 學術的인 次元에서 갖가지 提案과 아시아·太平洋地域內 民間水準에서 經濟協力의 강화를 시도하는 多樣한 努力이 展開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關聯國 政府도 이에 대한 公式的인 立場을 表明하지 않고 있다.

各國에 따라 特殊한 事情이 있을 수 있겠으나 本稿에서는 理論的으로 바람직한 地域內 經濟統合·協力を 구상하여 보았다. 問題의 성질上 分析的인 接近보다는 서술적인 評價에, 그리고 심오한 經濟理論보다는 설득력 있는 論理의 展開에 限定할 수 밖에 없었다.

끝으로 두가지 側面을 強調하고자 한다.

첫째, 긴밀한 經濟協力 關聯國들에게 利益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平和의 定着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는 點이다. 따라서 成功的으로 平和가 추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地域內 國家間 經濟的 利益을 가져올 수 있도록 經濟關係가 만족스럽게 운영될 수 있느냐에도 크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經濟問題에 局限된 協力이라 하더라도 다른 部門에서의 유대가 形成되지 않고 또 與件이 造成되지 않는限 원활히 推進될 수 없다는 點이다. 西유럽의 경협을 通하여도 이러한 相互依存關係의 중요성을 充分히 알 수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도 地域內 ‘共同體意識’의 缺如는 하나의 커다란 制約이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뜻을 같이 하는 國家’라는 분위기가 造成되어야 한다고 믿는다.